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 2011. 01. 01.
 개정 : 2015. 02. 06.
 개정 : 2018. 01. 29.
 개정 : 2018. 03. 09.
 개정 : 2019. 03. 01.
 개정 : 2020. 11. 06.

담당 : 기획실(02-950-5424)

| | | | |
|----------------------|--------------|-----------------|--------------|
| ----- 목 차 ----- | | | |
| 제 1 조(목적) | 제 2 조(기능) | 제 3 조(구성) | 제 4 조(위원장) |
| 제 5 조(위원장 직무 대행자 지정) | 제 6 조(임기) | 제 7 조(회의소집과 의결) | 제 8 조(회의록) |
| 제 9 조(간사) | 제 10 조(업무관장) | 제 11 조(시행) | 제 12 조(시행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성서대학교 학칙 제24장(등록금심의위원회)에 따라 설치하는 한국성서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5.02.06)

제2조(기능) 위원회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상으로 구성한다.(개정15.02.06)

② 위원은 교직원(학교 법인이 추천하는 법인인사 포함) 3인, 학생 3인, 관련 전문가 2인, 학부모 또는 동문 1인으로 구성하고, 어느 하나의 구성 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15.02.06)(개정 19.03.01)

③ 삭제(19.03.01)

④ 학생 위원은 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고, 관련 전문가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리한다.(개정 15.02.06)(개정 19.03.01)

제5조(위원장 직무 대행자 지정) 위원장 유고 시에는 총장이 위원장 직무 대행자를 임명한다.(개정 19.03.01)

제6조(임기) ①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에 위촉된 자가 임기 중 그 자격이 상실 될 경우 해촉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 학년도 1회 이상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 책정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1/4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 하여야 한다.(개정 18.03.09)(개정20.11.06)

제8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출석위원, 안건, 발언내용,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개정18.01.29)

② 회의 종결 후 회의록을 7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18.01.29)(개정20.11.06)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0조(업무관장) 위원회에 관한 제반 업무는 기획실에서 관장한다.(개정15.02.06)

제11조(시행)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2년 01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5년 0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5년 0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06일부터 시행한다.